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2014. 7. 1.

사건번호 2014년

제 목 불기소결정서

검사 노 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

I. 피의자 쥘 (JIN)

II. 죄 명 국가보안법위반(무고·날조)

III. 주 문

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한다.

IV.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

[피의사실 요지]

2013. 11. 1.경 리우찌아강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로 날조한 리우찌아강에 대한 허릉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의 출입경기록(이하 '출입경기록'이라 함)을 증거로 제출하여 국가보안법위반(무고?날조)

[수사결과]

- 피의자는 현재 소재불명이다.
- 기소중지한다.

(한편, 수사한 결과 김보현 등의 진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피의자 '성명불상'을 '쥘 (Jin)'로 변경하고, 피의자 쥘 가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입국시통보및입국직후출국정지요청 조치필).



문서확인번호

발행번호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(전화번호)

분류기호 및
문서번호

2014. 7. 9.

수 신 법무법인

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

제 목 불기소이유통지

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① 사 건 번 호	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
② 고 소 인 성 명	해당사항없음
피의자 (피고소인)	③ 성 명 전
	④ 주민등록번호 54
⑤ 죄 명	가.국가보안법위반(무고·날조)
⑥ 처 분 검 사	노
⑦ 처 분 년 월 일	2014. 7. 1.
⑧ 처 분 요 지	가-기소중지
⑨ 불 기 소 이 유	별지 참조
⑩ 비 고	

